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4. 10. 29 규칙 제 594호 개정 1998. 9. 23 규칙 제 722호(직제규칙) 2002. 2.16 규칙 제 801호(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3. 4. 11 규칙 제 819호 규칙 제 886호 2006. 11. 14 2008. 6. 16 규칙 제 93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2010. 3. 26 규칙 제 986호 2010. 12. 15 규칙 제 99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 12. 26 규칙 제1024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 7. 11 규칙 제1085호 일부개정 2018. 7. 31 규칙 제1184호 일부개정 2020. 3. 25 규칙 제1228호 규칙 제1184호(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6. 2020. 3. 25〉

제2조(사용허가) ①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법인·단체의 소재지가 관내의 자는 매 분기 개시 30일 전부터 사용일 7일 전까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법인·단체의 소재지가 관외의 자는 사용일 30일 전부터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허가 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운동장의 경우 법인·단체의 소재지가 관내의 자는 매월 개시 30일 전에 추첨을 통해 사용일을 결정하여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법인·단체의 소재지가 관외의 자는 추첨 후 잔여일에 한하여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 4. 11, 단서신설 2006. 11. 14, 개정 2020. 3. 25〉

② 시장은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허가 여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5〉

제3조(관람권의 종류 및 금액)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5〉

- 1. 특별권
- 2. 일반권
- 3. 군인, 학생권
- 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인, 학생)
- 5. 경로우대권
- 6. 어린이관람권
- 7. 기 타
- ② 관람권의 금액은 전용사용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 3. 25〉
- 제4조(입장권)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입장권의 발행은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는 모든 행사 및 경기에 적용한다. 〈개정 2020, 3, 25〉
 - ②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는 자 중 조례 제13조제2호에 따른 출전선수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한 각급 경기단체에 등록된 현역선수를 말한다. 〈개정 2020, 3, 25〉
-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조례 제14조의 감면율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0. 3. 26, 2020. 3. 25〉
 - ② 삭제〈2020. 3. 25〉
 - ③ 제1항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사용허가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5〉

「전문개정 2006. 11. 14〕

「제목개정 2020. 3. 25〕

- 제6조(사용료 및 관람료 반환청구) ① 조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용료를 반환보고자 하는 자는 당초 행사예정일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거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1〉
 - ② 조례 제11조에 따른 직매관람료 수입은 행사종료일을 기준으로 정산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 주최측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당일 매출금액의 50 퍼센트까지 매일 반환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5〉

- ③ 제2항에 따른 직매관람료 청구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 3. 25〉
- 제7조(관람권의 검인)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행사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광명시민체육관 관리책임자는 매장마다 검인 인영 [별표 1] 을 관람권 중앙에 날인한다. 〈개정 2002. 2. 16, 2010. 12. 15, 2011. 12. 26, 2020. 3. 25〉
 - ②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된 관람권은 행사종료 후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 제8조(관람권의 예매) ①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주최측이 정하며 예매개시일전 일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매권의 총수량 은 전체 관람권발행매수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 ② 행사 주최측은 최종 예매사항을 행사 당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의 잔표확인서와 잔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예매권은 예매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수입금 회계처리) ① 전용사용료는 사용허가한 날을, 그외 사용료 및 수입금은 행사종료일 또는 매출일을 기준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일이 공휴일이거나 근무시간이 경과된 때에는 다음 근무일을 기준일로 한다.
 - ② 관람권을 발행하여 예매할 경우 예매금액의 20퍼센트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③ 각종 수입금의 수납 및 납입등은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8, 6, 16〉
- 제10조(상행위사용료 산출방법) 조례 [별표 4] 상행위사용료 산출에 있어 물품의 종류, 수량의 과다로 판매금액을 부득이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다.
 - (연 입장인원 × 1인당 평균구매가격) × 10퍼센트
- 제11조(체육경기 및 단체행사 구분) ① 조례 [별표 1] 의 사용구분 중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한 각급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순수 체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 운영 조례 시행규칙

육경기를 말하며, 그 외 경기는 체육 이외 행사로 본다.

- ② 조례 [별표 1] 비고에 명시된 단체행사는 100인 이상이 한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전용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2조(피위임자 신고) 전용사용자는 관람권관리, 현금출납 등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피위임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출입증 발급) 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발급한다. 〈개정 2018. 7. 31〉
 - 1. 체육시설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2. 행사운영 및 진행요원
 -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제14조(체육지도자 선발) 조례 제2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및 전문인의 선발은 경력을 중시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5〉

제15조(각종 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별지와 같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2. 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3.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1. 14 규칙 제8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3. 26 규칙 제9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15 규칙 제99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②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실내체육관장은"을 "실내체육관 관리책임자는"으로 한다.

별표 중 "광명시실내체육관장"을 "광명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6호, 제18호, 제20호, 제21호, 제25호, 제27호 서식 결재 란 중 "담당"을 "담당자"로, "관장"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 서식 결재 란 중 "담당"을 "담당자"로 한다.

28 부터 44 까지 생략

부칙〈2011. 12. 26 규칙 제1024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실내체육관"을 "광명시민체육관"으로 한다.

부칙〈2014. 7. 11 규칙 제10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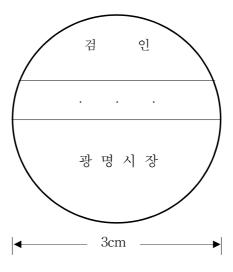
제2조 생략

부칙〈2020. 3. 25 규칙 제12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0. 12. 15〉

검 인 인 영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0. 3. 26〉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

신	주			소											
청	단		테 테	명					전	화	번	호			
인	대	丑ノ	· 성	명					생	년	월	일			
행		사		명					사	용	목	적			
사	전 -	용사	용시] 설											
(기 용	방	송	사	용											
시	상	행 9	위 사	용											
설	부숙	<u></u> 속시	설시	 } 용											
					주간		. ㅅ]부터	1				시.	까지(일)
사	용	,	7]	간	야간		. ^{\\}]부터	1				시.	까지(일)
행	사	관	계	자			명	예기	상관	람긴]			회/	명
	ュ	분	7:	1)	지정석	일반석	군			인	_	딘	- え	세 권	초대권
관		<u>L</u>		11	(특별석)	근인 ㅋ	학	생	어	린이		일반		군인.학생	2541 (1)
람 료	금	액													
77-	매	수													
청합	「광 감니디] 체·	육시	설 관리	운영 조	례」	제32	조 i	구정	에	의하	-여	위와 길	는이 신
						신	청인				•			· (인)	
π	구로	붙임	:사	용(시	-업)계획/	서 1부.									
ΙĄΟ	방 명	ᅧᄉ	장	刊	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0. 3. 26〉

(앞면)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통 지 서

허가번호:

주					소														
단		체			명						전	화	번	호					
대	丑	자	성		명						생	년	월	일					
행		사			명														
사	전 -	용ス	} 용	시	설														
사 용	방	송	入	}	용														
시	상	행	위	사	용														
설	부속	속 ㅅ] 설	사	용														
.1			_1		1	주간				시부	터				. ^入	· 가	지(일)
사	용		기		간	야간				시부	터				. [,]	· 기까?	지(일)
허	가		조		건	내용은	뒷면	과	같음										
		분		계		지정석	일반	. 사	군	인	노	인		Ţ	간	체			대권
관		正		<i>/</i> 1		(특별석)	일 반	.´Ÿ	학	생	어	린이		일빈	<u>}</u>	군인	• 학	생으	- 내건
람 료	금	액																	
11-	매	수																	
기	타		사		항				•							•			
전	용	사	용	-	료		원	닙	부일	!				7.	<u>}</u> 1	면			
지현	「광 갑니디		시 🥕	쉐운	낚시	설 관리	운영	조	례 _	제32	존의	규 ?				여 4		같ㅇ] 통
							광	5	병 /	시	장								

허 가 조 건

- 가. 사용자는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 사용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외부의 경비 등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일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주최측이 진다.
- 다. 체육시설 내에서는 임의로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사전에 신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라. 선전물 등을 임의로 게시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 필요 시에는 사전에 신청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마. 체육시설은 청결하게 사용 유지하고 행사 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소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 바. 집회허가 및 공연신고는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
- 사. 체육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료 등 음식물 반입과, 판매 및 취사행위를 금지한다.
- 아. 흡연구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 자. 동절기 폭설로 인한 잔설 결빙 시는 인조잔디구장 허가를 취소한다.
- 차. 사용기간 중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로 할 때는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0. 3. 26〉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

신	주 소		
청	단 체 명		전 화 번 호
인	대표자성명		생 년 월 일
허	가 사 항	허 가 내 용	변 경 신 청 내 용
행	사 명		
사	용 목 적		
사	전용사용시설		
용	방 송 사 용		
시	상행위사용		
설	부속시설사용		
11	0 -1 -1	주간	주간
사	용 기 간	야간	야간
관	람 료		
기	타		
경	「광명시 체육 신청합니다.	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
		신청인	(인)
-	광 명 시 장 즉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0. 3. 26〉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통지서

허가번호:

내용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하였기 통지합니다.

광 명 시 장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08. 6. 16〉

부 대 시 설 설 치 신 청 서

행		사	명							주 최			
행	사	기	간							1	'		
				1	후 대	시	설	설 치	내	역			
부	대	시 설	명							용 도			
설	치	일	시										
규			모							위 치			
부	전	기 시	설			V/		KW	,	조명	경수		개
대	음	향 시	설	스:	피커		대/		W	마	기크		개
설	선	전	물	게시,	부착	m²/	개,	m²/	개	, m ² /	개,	m²/	개
비		~ <u>~</u>	2	진열,	전람	m²/	개소	, m ² /	개소	, m²/	개소,	m²/	개소
기	타	시	설										
담	당	공 무	원	직		성명			(인)	비			
확			인	직		성명			(인)	고			
설		광명시 고자 ~				운영	조례	」제16	· ·	·정에 의	 하여	부대시	설을
	광 [명 시	장	귀하			신 ²	청인			(인)	

[별지 제6호 서식]

	ΓТ	•	V	\neg	
중계방송					신청서
	-	라디	오		

행		사		명								
행	사		기	간								
중	계		방	송	1	Ì	7		2 회		3	3 회
일				시								
중	계		방	법	생중계		회, 녹	·화(-	녹음)	회, 유	- 성중계	회
방	송	사	용	묘					원(산	출근거)
五	로	ユ	램	명			담당P	D		아	나운서	
	위	와	같이	신	청합니다	•			·			
						1	방송 =	구 명	:			방송국
							대 표					(인)
							주최측단					
						I	대 표	자	:			(인)
	광 명	ļ /	니 진	; 귀	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0. 3. 26〉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신	주			소												
· 건 청	 단		체	명				전	화	<u></u> 번	호					
인	대	丑	 자 성	- 명				생	년	월	일					
행		사		명				사	용	목	적					
사	용	시	설	명												
,					주간		. 시부	·터				. 시	까거	<u>.</u>		일)
사	용		기	간	야간		. 시부	·터				. 시	까거	(일)
감		면		액				원	(사-	용료	의				퍼	센트)
감	면		사	유												
기				타												
따	로붙	신의	청합니: 증빙	서류	시 체 [.]	신청		圣 适		제14	14 2 °		인)	사	8]	로 의
_	1 6			1 -	-1											
40	5 년	3 /	시 장	귀	하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0. 3. 26〉

위 임 장

행	X	ŀ	명										
행	사	기	간										
피 위	주		소						전	화	번	ই	
임 자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단	체	명										
임	소	재	지						전	화	번	ই	
자	대	丑	자						생	년	월	일	
			ㅏ기긴]합니		피위역	임자에	게	행사진	행에	필요		제반	회계, 경리사무
						위임지	\	단체명:			•		
								대표자:					(인)
Ţ	광 명	ᆝ시	장	귀하									
		-	•	,									

행사명:

초

대 권

임 원, 선 수 권

계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06. 11. 14〉

관 람 권 검 인 신 청 서

행사기간:

구		분		매	수	요	금	예매요구량	비고
지	정		석						
(특	별		석)						
일	반		석						
군 인,	학	생	권						
노 인,	어	린	이						
일 반	단	체	권						
군 인 (학) 생)	단체	네 권						

위와 같이 관람권을 검인 신청합니다.

위임자	단체명:		
	대표자:		(인)

(피위임자)

광 명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06. 11. 14〉

관 람 권 예 매 신 청 서

행 사 명: 행사기간:

2	ъH	-Ji	人	-7	الم	예	미	장 소	
종	별	매	수	금	액	상호또는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ヹ	1								

단 체 명: 대 표 자: (인) (피위임자)

광 명 시 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0. 12. 15〉

관 람 권 잔 표 확 인 서

행사명: 행사기간:							담당자	팀 장	_ 결 재
	7	w	પો સો		ر (اب		J = A	11]	
직 • 예매구분	종	별	발 행	7	매성	5 千	잔 표 수	비	고
계									
						•			
				단 :	체 명:				
			확인자					(인)	
				(피	위임자)				
			입회자	;	직				
				성	명:			(인)	
광 명 시	장 귀:	하							

	_					
[坩 ス]	제12호	서시]	/ 개 저	2010	19	15\
'= ' \	711144	71 7 1	1/11/6	$\angle O \cap O$.	1 4.	1.)/

체육시설단체	_ 입 장 _ 신청서 _ 연습이용 _	체육시설단체	□입 장□ 허가서 및 영수증 □ 연습이용 □
시설명 :	결 담당자 팀 장 재	시설명 :	
사 용 일 시		사 용 일 시	
단 체 명		단 체 명	
사 용 목 적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사 용 인 원	명
대 표 자	사용료 원	사 용 료	원
	단체 (입 장)을 신청합니다.	상기와 같이 영수합니다.	체육시설 단체 (입 장)을 허가
신청인	(인)		광 명 시 장 (인)
광 명 시 장 귀하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06. 11. 14〉

연습이용권

NO.						
	()		
연:	습이	용구	원(토	L관·	분)
일금						원
	광	명	시	장		

NO. 연습이용권(영수증) 일금 워 광 명 시 장

주: 1. 금액을 명시하여 인쇄한다.

- 2. 금액별로 일련번호를 인쇄한다.
- 3. 시마크는 다른 색으로 인쇄한다.

(뒷면)

앞면

- 1. 시설별 금액별로 구분 정리하여야 1. 본권은 입장할 때 관계직원에게 한다.
- 잔량이 100매 미만일 때에는 편철 하다.
- 야 한다.

주 의

- 제시하여야 합니다.
- 2. 100매 단위로 편철하되, 1일 매표 2. 본권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3. 수불부와 일치시켜 당일 결산하여 3. 이용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사 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02. 2. 16〉

연 습 이 용 권 수 불 부

이용시설명:

일자	금액별	수	렁	사	용	잔	卫	결	재
일 사	급액별	매수	번호	매수	번호	매수	번호	담당	관장
				·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06. 11. 14〉

입 장 권

	입징	권(보관	분)	
	(일병	반용 .	할인	[용)	
일금					원
	광	명	시	장	

	입징	권(영수	증)	
	(일팀	반용 •	할인	[용)	
일금					원
	광	명	시	장	

주: 1. 금액을 명시하여 인쇄한다.

- 2. 일반용과 할인용은 다른 색으로 인쇄한다.
- 3. 시마크는 다른 색으로 인쇄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0. 12. 15〉

입장권(이용권)매상일계표

				담당자	<u>팀 장</u> 결
					재
구 분	단 가	매 수	매상금액	누계금액	비고
		· · · · · · · · · · · · · · · · · · ·			

※ 단체연습이용, 회원권 발행금액을 포함.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10. 3. 26〉

회 원 권

(앞면)

NO.

(

회 워 권

)

일 금: (일반용·할인용)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 부터까지

. . .

광 명 시 장

주:1. 금액을 명시하여 인쇄한다.

- 2. 일반용과 할인용은 다른 색으로 인쇄한다.
- 3. 시마크는 다른 색으로 인쇄한다.

(뒷면)

주 의

- 1. 본 회원권은 입장할 때 관계직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2. 본 회원권은 타인에게 양여할 수 없습니다.
- 3. 본 회원권은 유효기간을 초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10. 12.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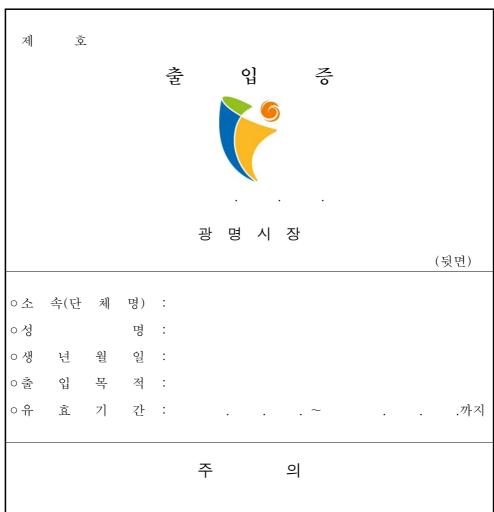
회 원 권 발 행 대 장

연번	이용시설명	조벼	금액			회			9	원		발행일	결	재
선민	기중시설명	궁필	ㅁ뙉	성	평	생	년	월 일		주	소	일생원	담당자	팀장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2020. 3. 25〉

출 입 증

(앞면)



- 1. 본증은 출입할 때 관계직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2. 본증은 타인에게 양여할 수 없습니다,
- 3. 본증은 출입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반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10. 12. 15〉

출 입 증 발 급 대 장

(د د د	소 속	,1	1	20 A A	ام الحال	۵ - - ا - ا	ネム ロコ	결		재
연번	(단체)	성	명	생년월일	발행일	유효기간	출입목적	담당자	팀	장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10. 12. 15〉

관 람 권 매 상 일 계 표

						담당자	팀	장	결
행사명:									재
З Ы	당일ㅁ	·사상분	기매	상 분	누	계		11]	
종 별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매 수	급 약	Ħ	刊	고
		입호	기자 단체] 명:					
			대 표	. 자:			(인)		

(피위임자)

성 명:

확인자 직

- 2533 -

(인)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10. 12. 15〉

직 매 관 람 료 청 구 서

				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분 임 경리관	결
							재
급 액				ę	· 현정(₩		원)
	청	구	금	액			
구 분		급		액		확	인
금일매상금액			원	[정(₩)		
매상누계금액			원	[정(₩)		
기 지 급 금 액			원	[정(₩)		
금회청구금액			원	정(₩)		
위와 같이	기 직매 관람료	지급을	청구함				
	Ž	당구인			(인)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ż	청구인	٠	٠	(인)		
광 명 시 장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06. 11. 14〉

부 속 시 설 사 용 확 인 서

사 .	용 시 설 명										
행	사 명										
사	용 기 간		시 부터 .	시 까지							
	구 분	사용내역	산출내역	담당공무원확인							
	라이트 조명	시간 분									
부	난 방	시간 분									
속	냉 방	시간 분									
시 설	음 향 시 설	시간 분 마이크 개									
	전 광 판	시간 분									
	스코어판	시간 분									
기타 시설											
		단체명 :									
		확인자 대표자:	(인)								
굉	광 명 시 장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

		빈	<u></u> 환	청	구	서					
제	호		년도								
행	사	윤									
청구서	주	소									
서	성	명			전화번호	<u>-</u>					
(단체	(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										
일	금				원정(₩		,)			
반환	사용	료명	}								
2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조례 제15조제2항제 호)										
	 청구인: (인)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명)										
분'	분임경리관 귀하										
분임	경리	관	분임지출	·원	출 납 원	j	대장정리				
•								_			

		영	수	증	서					
제	호	년.	도							
행	사 5	경								
청구서	주 4	<u> </u>								
서	성 5	경		전회	·번호					
(단체]인 경-	우는 법	인명 대	표자명)						
일	금			원정(₩)			
반환	· 사용료	명								
위와 같이 반환받았기 영수합니다.										
		영국	수인 :			(인)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명)										
분임경리관 귀하										
분임	김경리관	<u></u> 분약	임지출원	출 년	급 원	대장정리	빆			
		1		1		ı				

[별지 제25호 서식] 〈개정 2010. 12. 15〉

체 육 시 설 사 용 정 산 서

	ト 명: 기간:												담	당자	Ę	팀 장	결 재
구				분			산	출	내	Ō	1	-	금	액		비	고
전 용 사 용 료		료															
방송사용료			Т.	V,라디	오												
상행위사용료																	
부대사	실사용	班															
소		계	사	용	료												
관 수 사	함	대 이끄 대	단	정 반 생, 군 체 대상금 제	권	기금			사용	} 료							
소		계	사	용	료												
햔ਧ	계	액							원	정(₹	₩)	
납	부	액	₩			사용료				매성	낭액		1	반환역	백		
정	산	액	금						원	정(₩)	

□ 허가내용○ 행 사 명 :

[별지 제26호 서식] 〈신설 2006. 11. 14〉

운동장 사용 취소 신청서

 사용일시 : 사용시설 : 사용자 인적사항 주 소 : 성 명 : 					
□ 취소사유 ○					
위와 같이 시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사용 소사유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운					
			년	월	일
광 명 시 장 귀하	신	청	인 :		(인)

[별지 제27호 서식] 〈개정 2010. 12. 15〉

	시민	!운동경	결 재		담당자	팀 장								
		열	일	일 요일(날씨 :)					
□ 운동장 이용현황○ 이용실적(당일/누계):회, 명/ 회, 명														
해시며	사용자	사용		0]-	용인원		- 비	7	근	무자				
8/1/8	71871	시간	계	성인	청소년	기타	ыı	14	성명	서명날인				
 □ 시설물 관리현황(훼손 및 보수 등) ○ □ 기타 특기사항 ○ ○ 														